

---

# 서울시 기부심사 및 민간자원 연계 추진 안내서

---

20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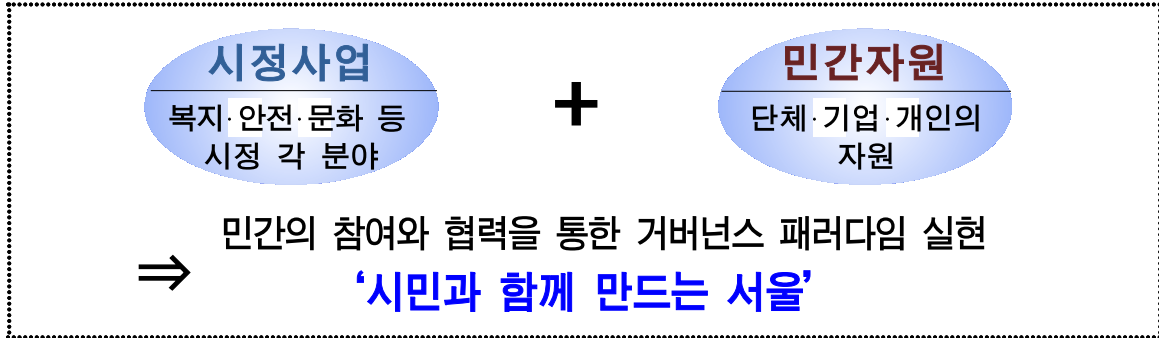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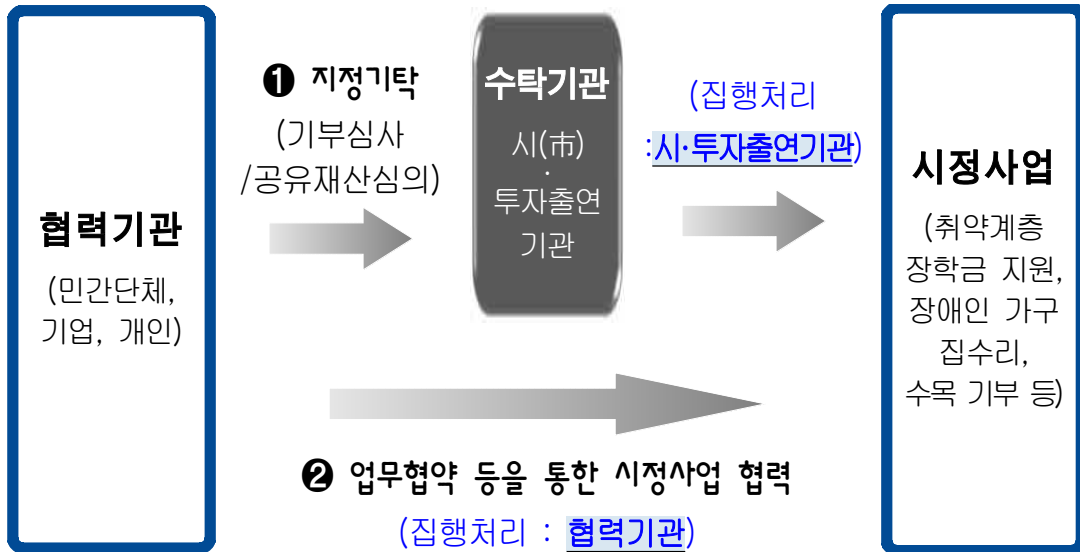
---

<b>1</b>	<b>「시정사업 - 민간자원 연계」 개요</b>	<b>1</b>
<b>2</b>	<b>지정기탁 (현금·물품 / 공유재산 기부채납)</b>	<b>2</b>
	지정기탁 ① : 자발적 기탁금품(현금·물품) 접수	2
	지정기탁 ①-1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절차	4
	지정기탁 ② : 공유재산 기부채납 (부동산 등)	6
<b>붙임</b>	지정기탁서 /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 장부가액 확인서 / 지정기탁(기부심사위원회) 관련 법령 / 기부금영수증 양식 / 기부증서 양식	7~12
<b>3</b>	<b>업무협약을 통한 민관협력사업</b>	<b>13</b>
	협력사업 ① : MOU 등을 통한 사업 공동추진 등	14
	협력사업 ② : 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협력사업	15
	협력사업 ③ :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15
<b>붙임</b>	업무협약서 예시	17

# 1. 「시정사업 - 민간자원 연계」 개요



## 〈 추진 체계 〉



### ① 지정기탁

☞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가 해당기관(부서)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 받은 민간자원을 지정용도에 따라 집행

- 현금 및 물품기부 : 기부심사위원회(민관협력담당관)
- 공유재산 기부채납(부동산 및 그 종물, 유가증권 등) : 공유재산심의회(자산관리과)

### ② 업무협약 등을 통한 시정사업 협력

☞ 시에 직접 기부하지 않고, 협력기관이 직접 집행하거나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집행

## 2. 지정기탁 (현금·물품 / 공유재산 기부채납)

### ■ 지정기탁 ① : 자발적 기탁금품(현금·물품) 접수

**기부**란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금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모금(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지만,

모집행위 없이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은 **자발적 기탁금품**으로서, 일정한 절차(기부심사)를 거쳐 공공기관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발적 기탁 : 기부금품의 출연에 대한 의뢰, 권유, 요청 없이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기부 행위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자·출연기관**은

⇒ **기부금품 모집(모금) 불가**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 근거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예외 1]** 기부금품 모집(모금) 가능기관 (4)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예외 2]** 기부심사 없이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기관 (6) : 모금은 불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도서관, 서울의료원, 서울시립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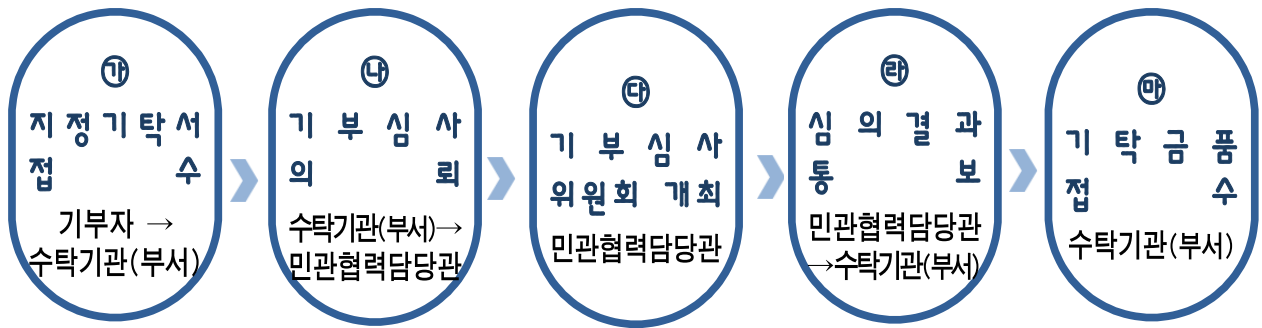
구분	기관명	근거법	업무추진방법
<b>원칙</b> 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	서울시 실·국·본부, 산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b>예외 1</b> 모금 및 접수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b>예외 2</b> 기부심사 없이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접수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법에 의거 접수

※ 서울시립대학교는 (재)시립대학교발전기금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

## ■ 지정기탁 ①-1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절차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부서(기관)는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시면 됩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매월 20일 전후로 열리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민관협력담당관으로 심의 안건을 제출해 주시면, 심의 후 3일 이내에 수탁기관(부서)로 심의결과가 통보됩니다.

### 〈 추진 체계 〉



㉠ 지정기탁서(사용용도 및 기탁사유 명시) 접수 :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 기부심사 의뢰 : 수탁기관(부서) 공문제출 → 민관협력담당관

- 기탁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붙임 1~3] 참조
- 기탁물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견적서·타견적서(구매물품), 장부가액 확인서(제작물품)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매월 20일 전후)

㉣ 심의결과 통보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 기탁금품 접수(기부금 세입조치, 세출예산 편성 등) : 수탁기관(부서)

-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증서 발급 ※ [붙임 5~6] 참조

### [참고1]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처리

기부금품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부서(수탁기관)에서 관련 법에 따라 처리

#### ◎ 금 전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입과목 : 잡수익-기부금) 조치한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 ◎ 물 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으로 등재하고 보관·사용

### [참고2]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시행령 제12조) : 15인 이내(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부시장)

◎ 회 의(시행령 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음

◎ 심의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 현금 또는 물품에 한정  
(※ 부동산 등 공유재산 및 용역(인건비) 등은 해당 없음)

◎ 심의내용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신설)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 ■ 지정기탁 ② : 공유재산 기부채납 (부동산 등)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유가증권, 지식재산(특허권, 저작권 등) 등이 **공유재산**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sup>1</sup>관리하기 곤란하거나, <sup>2</sup>필요치 않은 재산의 경우, <sup>3</sup>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가능), <sup>4</sup>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 추진 체계 〉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7조



[붙임 1] 지정기탁서

지정기탁서

1. 기탁금품

○기탁금액:                    원  
○기탁물품:                    점(명세:별첨)

2. 지정기탁 기관

3. 지정기탁 사유

4.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기 금품을 지정기탁하려고 합니다.

지정기탁자의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 1. 제안 사유

### 2. 기탁금품 내역

연번	기탁자	기탁금품	용도

### 3. 사전검토 항목(신설)

내용	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검토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

### 4. 의견

### 5. 관련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동법 시행령 제14조
  - 제1항 :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제2항 : …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 0000



[붙임 4] 지정기탁(기부심사위원회) 관련 법령

구 분	관 련 조 문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p>	<p>[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li> <li>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li> <li>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li> <li>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li> </ol> </li> <li>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li> <li>2. 안전행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li> </ol> </li> <li>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li> </ol>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li> <li>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li> <li>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li> </ol> <hr/> <p>[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li> </ol> </li> <li>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ol>

**[붙임 5] 기부금영수증 양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일련번호	
------	--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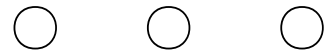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급)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기부증서



귀하는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민관협력담당관)에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을 위해 기탁금품(의료 키트 등 500점, 금5천만원 상당) 기부하셔서 서울시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 3. 업무협약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시(市)에서 지정기탁(직접기부)을 받지 않고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협약(MOU)을 거쳐 진행하며, 민간(단체 및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시정사업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경우 협력 가능합니다. 그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적장애인 일자리 창출 「행복한 베이커리 & 카페」 개점·운영

┌ 시 : 청사 유희공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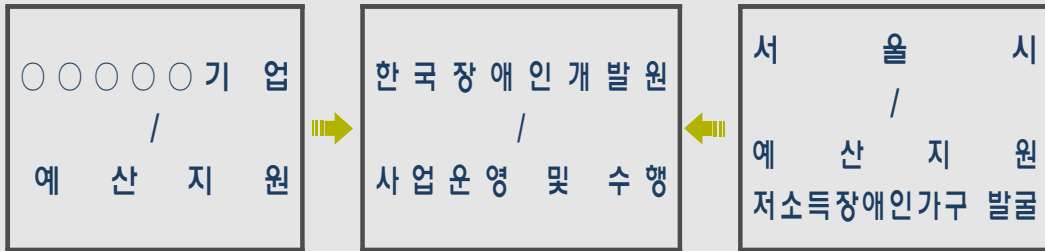
└ 민간(000재단) : 카페 개점 비용(인테리어 등) 및 지적장애인 인건비 지원, 제빵·제과 등 기술교육 등

구 분	지정기탁 (직접기부)	업무협약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집행처리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기관(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	○	×
심의 (기부심사/ 공유재산심의)	○	×
대 상	물품 및 현금(기부심사) 공유재산(공유재산심의)	다양한 형태로 협력이 진행됨 (장애인 집수리 공사 등)
장 점	시에서 직접 지정된 사업에 사용 가능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며, 민간(기부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므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적음
단 점	본청의 경우, 차년도 세출예산으로 기부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시 예산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 범위에 제약이 있음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에 부적합)

## ■ MOU 등을 통한 사업 공동추진 등

### ◆ 서울시 기존사업 협력 : 장애인 가구 및 시설 개보수 지원

#### ○ 협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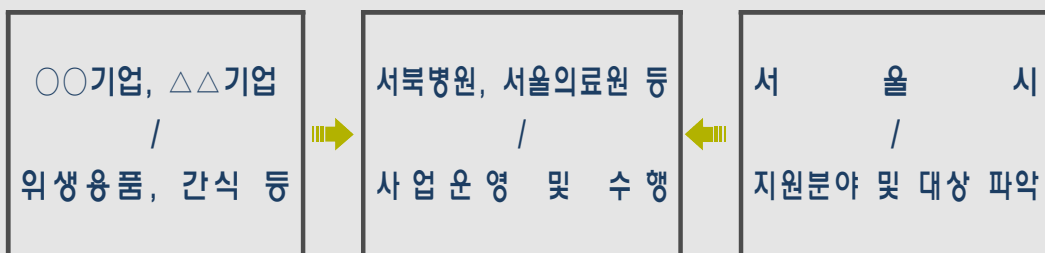


#### ○ 협력내용

- ○○○○○기업에서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가구 집수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집수리 지원
- 그 외, 장애인 소규모 복지시설(주단기 보호시설 등) 기능보강

### ◆ 신규사업 협력 : 메르스 관련 물품 지원

#### ○ 협력구조



#### ○ 협력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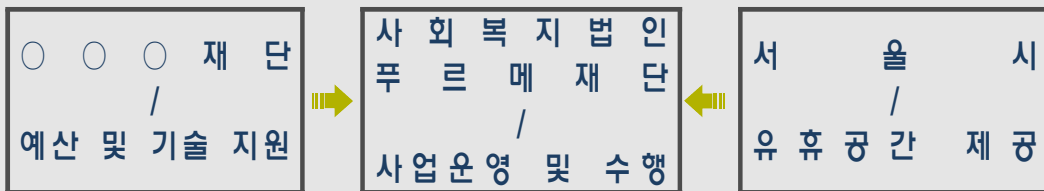
- ○○기업, △△기업 등에서 메르스 관련 지원 의사를 밝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물품 지원



## ■ 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협력사업

### ◆ 지적장애인 일자리 창출 「행복한 베이커리 & 카페」 개점·운영

#### ○ 협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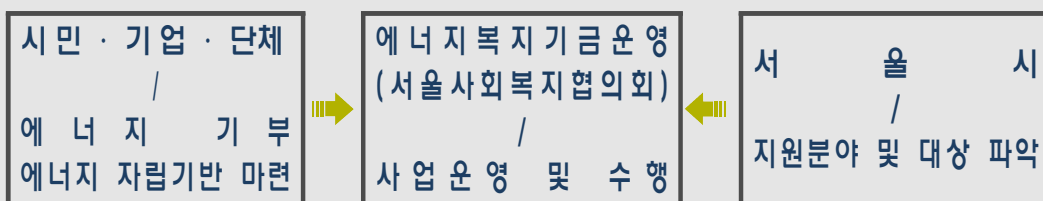
#### ○ 협력내용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 OOO재단, 푸르메재단, 서울시 3자 협약
- 서울시에서 유휴공간 제공, OOO재단에서 예산 및 기술 지원,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 채용 및 사업운영

## ■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 ◆ 에너지복지플랫폼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조성

#### ○ 협력구조



#### ○ 협력내용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과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
- 기금은 LED전등 교체, 단열시공, 출입문 보수, 고효율보일러 교체, 미니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빈곤층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됨

## [참고] 업무협약식 체크리스트

- **주요 내빈 일정 협의** : 비서실
  - 행사 개요 및 참석자 프로필 준비
- **협약기관 참석자 협의** : 참석 규모 확인
- **협약 체결 장소(좌석배치) 협의**
- **협약서(안) 협의** : 협약서 및 판넬 제작
  - 약정 체결 당사자의 의무사항, 사업수행 내용, 기간 등 명시
- **진행 및 식순 협의** : 진행자, 인사말 순서, 시나리오 등 확인
- **기타 유관부서 협의 및 준비사항**
  - 담화 장소 및 다과
  - 엘리베이터 등 이동 동선 확인
  - 1층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출입 담당자에게 행사 안내문 전달
  - 시설 및 관련 물품(마이크, 프로젝터, 사인용 펜 대여 등) 확인
  - 보도자료 배포 및 촬영 협의
  - 주차(방문 차량번호 등록) 등
- **로고표출**
  - 행사 광고물 혹은 기념품에 단체(기업)의 로고 표출 가능
    - ※ 각종 공공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제1항)
  - 기업 로고는 서울시 로고 사이즈와 동일(혹은 작게 표출)하게 제작

**‘서울특별시’-‘○○○(단체 및 기업명)’-‘○○○재단’  
○○○○○지원사업 공동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재단, 재단법인 ○○○재단은 ~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공동 협력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재단 및 ○○○재단이 ○○○○○지원사업을 공동 협력함으로써 ~와 사회통합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담당한다.

1. 서울시는 공간 확보 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재단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지원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 ○○○재단은 사업을 운영·수행하고, 사업 진행과정 및 결과를 협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공익추구·비정치·비영리의 목적)** 본 협약의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 종교 또는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배제한다.

**제4조(세부시행)** 이 협약의 추진을 위해 협약의 당사자는 제2조 각호의 분야별 세부 추진사업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2.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재단 대표  
○ ○ ○

○○○재단 이사장  
○ ○ ○